

데 이 콤
천 리 안

F A X 서 비 스

지정수신인 : 박원순변호사

수신 : FAX/S225229994(박원순변호사)
 송신 : 1KR/DACOMBIS/CHOLLJAN//J1116
 송신 시각 : 94/07/08 15:06
 수신 시각 : 94/07/08 15:26
 메시지 ID : 0000132790
 제목 : 6.29절의서답변에 대한 보도자료

송신자 : J1116 (윤미향)

한 국 정 신 대 문 제 대 책 협 의 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회 집, 100-391
 02) 263-2802, 2803(FAX결용)

정대협 : 제 94 - 25 호

제 목 : xxx 보도자료

(제목 : 정대협의 한국정부에 전달한 6.29 절의서에 대한 외무부 답변에
 대한 재질의서 발송)

본회는 지난 6월 29일, 외무부 유병우 아주국장(한국정부 정선대선투표대책반장)을 뵈
 답하여 아래 본회 공문94-21호의 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아래
 와 같이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본회가 절의한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회피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답변에서 한 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정부의 "아시아교육센터 설립"기금안에 대한 본회의 절의에 대해
 유병우 아주국장의 구두의 답변에서는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문서
 상으로는 그러한 답변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회는 최근에 일본정부의
 보물창 조성하는 조치로서 기금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가시화 되고 있고, 일본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는 한시점에서 한국정부가 그 기금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보도하여 주시
 서 아시아교육센터설립 기금안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범죄성
 에 면죄권을 주지 않도록 압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국 정 신 대 문 제 대 책 협 의 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회 집, 100-391
 02) 263-2802, 2803(FAX결용)

정대협 : 제 94 - 24호

1994. 7. 8

수신 : 외무부 장관

제 목 : 위 부서의 문서번호 아일 12000-302에 대한 절의
 -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의 '아시아교육센터 설립기금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1. 위 절의서 보내주신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회에서
 전달한 절의

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발송분한 답변에 대
 해서 절의가
 고가 합니다.

2. 전성규명부분에 있어서

본회도 이미 위 부서의 관할하에 각 구청에서 군내위안부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
 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회가 알고자 했던 것은 피해자 신고접수 외에 한

국정부의 '구식만저시대 총독부 문서 조사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본정부에게 외무부장관 회답 등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해서 일본정부에 대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배상문제에 관해서,

단일단체와 활동자원을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후예산을 지원하고, 유엔 등에서 활동시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자원을 한다는 귀 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를 참조하여 앞으로의 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가 결의한 정확한 내용은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의 관련하여 정회하고 있는 [국외보상]에 대신한 '아시아 청소년, 유학생' 지원을 위한 '아시아고려선라기금'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였습니다.

본회의 8월 23일, 유방우 다국국장을 전달하였을때는 구두로 분명하게 '한국정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필요도 없다.'고 답변하였고, 본회 저온회 기획위원 등이 '특정 희생자 등'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희생자라도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을 찬성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찬성하지 않는 한 일본정부가 그 기금안을 결정하여 발표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문서에 의하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기 보다는 '사과'의 양심의 갖을 표시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후속조치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전후책임 인정차원에서 자주적으로 거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일측의 조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일본정부의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임'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이 기금안에 대해서 우리정부의 좀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들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정부를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강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정부의 사회부직용협약 기안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다른 시안안에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본회에 회신하여 부서면 고맙겠습니다.

2. 위회 결의들에 대해 7월 15일까지 분명한 표현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동대표 이 요 재, 윤 정 욱, 김 희 원

정대협 : 제 93 - 21호

1994. 6. 29

수 신 : 김영삼 대통령

참 조 : 한승우 외무부 장관

제 목 : 일본은 '위안부'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여러한 계층분리주 하시기 수고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은 '위안부'문제가 사과에 제기되고, 활동이 시작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진상조사 활동의 결과로 1,2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우리정부도 1992년 7월에 일지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중간보고서를 발표한지 벌써 2년이 지났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진상조사활동이커녕 일본정부에 대한 진상조사요구 등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전쟁'에 들어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진정된 활동과 대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회 '정부차원에서 일본정부를 향해 유감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주 오해의 위안부문제 대한관용에 있어선 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일본군의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상규명에 대해서,

1) 지난 1992년 7월의 정부 중간조사발표이후 진상조사에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진상규명에 있어서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게만 그 주도권을 내맡긴채 방관만 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정부에게 구식민지 시대 총독부 문서들을 조사할 것과, 먼,리,군 등의 남은 자료들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조사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2. 일본정부측에 3차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일본정부의 2차 조사보고 발표이후 한국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정부의 2차 조사보고 발표이후 적극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의 1,2차 보고서에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령체계, 최고책임자, 위안소의 상황, 평민의 여성들이 끌려갔는지, 폐관후 어떻게 했는지 등 전체규모에 대해서 아주 불충분한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더욱 더 철저히 조사한 것을 일본정부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할 의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일본민간학자들에 의하면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 중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많은 자료가 미공개된 채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문서들을 조사하여야 제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일본정부에게 미공개문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의사는 있습니까?

2. 배상문제에 대해서 진의하겠습니다.
1. 민간배상청구권운동 지원에 관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일본정부에게 동전적 배상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단, 민간단체 등을 배상요구운동은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이후 1년이 지났도록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에서 어떻게 민간단체의 배상청구운동을 지원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교류센터 기금안]에 대해서,

최근 일본정부에서는 피해자개인에게 직접 배상,보상을 주 없고, 대신에 아시아에서 오는 청소년, 유학생지원에 위한 아시아교류센터설립 기금안을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7일, 본지와 일본 다키노 외정심의실경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이러한 군위안부 문제를 인정할, 인정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국으로서의 사회학문가 범죄으로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침략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이의를 앞세우고, 이 문제를 매듭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정부도 이 간접적으로 이 소식을 전해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앞으로 일본정부에게 이 기금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우리는 지난 2월 7일, 피해자 28인과 함께 일본정청에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 등 처벌하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가리워지고, 민사적 성격, 돈의 문제로 한,일 양국기관과 양국 민간에 외국인이 온 일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범죄자 처벌요구로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인도에 반하는 범죄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소,고발장에 대해 일본정청은 대응장도 없이 시교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일 양정부가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시효부자유원칙에 가입하여 일본군 '위안부'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측에서 이 시효부자유원칙에 가입하여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의사는 있습니까?

외무부 답변

문서번호 : 이원 12680-382(7월 2일)
제 목 : 군위안부 관련 질의서에 대한 직선

1. 위하에서 64.6.20 우리부에 제출한 군위안부 관련 질의서에 대해 아래의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문1에 대하여

· 우리정부는 50.7.26. 생산안전지원법 시행령 공포로 내국인의 경우는 다 시,군,구청을 통해 해외거주자의 경우는 재외공관을 통해 군대위안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전상규명과 이틀 의사의교환으로 자자손손에게 교육시켜 가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을
나. 질문 2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민간단체의 활동을 가능한 지원한다고 한 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
부예산을 지원하고, 유엔 등에서의 활동사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
기원을 한다는 것임.

추가하는 바와 같이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동종의 보상보다는 철저한 전상
규명과 이틀 의사의 교환으로 삼아 가도록 요구하므로써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정부는 이러한 기본입장하에 시화와 번성의 뜻을 표
시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주속조치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후처인 광산파원에서 지주
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일족의 조처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
장임. 따라서 우리는 일본정부의 주속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임.

다. 질문 3에 대하여

동형의 기안문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검토후 그 결과를 추
후 의변하리함.

2. 대외의 발언을 가원합니다. 끝.